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06호(그2)
2023. 9. 8.(금)



목 차

◆ **자치법규 등**

[규 칙]

제4589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자치법규 등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589호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2023년 9월 8일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제11호” 를 “제5조제12호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. 장애인 버스요금
- 17.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

제3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.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자 : 제1항제16호의 장애인버스요금, 제1항제17호의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제안이유

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,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를 추가(안 제2조제1항)

나. 관련 조례 문구 오탈자 수정(안 제3조제1항)

다.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및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을 추가(안 제3조제1항)

라. 장애인 버스요금 및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추가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개정(안 제3조제2항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